

# 지반조성 · 포장공사업

## ■ 업무내용

- **토공사**: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
- **포장공사**: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·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· 활주로 · 광장 · 단지 ·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  
(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)와 그 유지 · 수선공사
- **보링그라우팅**: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
- **파일공사**: 함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

## ■ 등록기준

### 1. 자본금

법인	개인
1.5억원 이상	1.5억원 이상

### 2. 기술능력

<b>토공사</b>	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)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른 토목 · 광업 분야(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한다)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
<b>포장공사</b>	가)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
<b>보링 · 그라우팅 · 파일공사</b>	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)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다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

<b>기술사</b>	용접, 농어업토목, 토목구조, 토질 및 기초, 도로 및 공항, 지질 및 지반, 토목시공, 토목품질시험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, 건축시공, 건축품질시험, 화약류관리, 지적
<b>기능장</b>	용접, 건축목재시공, 건축일반시공, 지적, 위험물
<b>기사</b>	용접, 토목, 응용지질, 건설재료시험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, 콘크리트, 화약류관리, 지하수, 지적
<b>산업기사</b>	굴착기, 기증기, 로더, 롤러, 모터그레이더, 볼도저, 아스팔트피니셔, 공기압축기, 쇄석기, 기계조립, 용접, 토목, 건설재료시험, 토목제도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, 콘크리트, 포장, 건축목공, 건축일반시공, 비계, 건축제도, 철근, 화약류관리, 굴착, 지하수, 지적, 위험물
<b>기능사</b>	굴착기운전, 기증기운전, 로더운전, 롤러운전, 모터그레이더운전, 볼도저운전, 아스팔트피니셔운전, 천장크레인운전, 천공기운전, 공기압축기운전, 쇄석기운전, 기계가공조립, 피복아크용접, 특수용접, 가스텅스텐아크용접,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, 건설재료시험, 전산용토목제도, 측량, 콘크리트, 포장, 거푸집, 건축목공, 비계, 전산용용건축제도, 철근, 시추, 화약취급, 지적, 위험물
<b>기능사보</b>	다듬질, 특수용접, 가스용접, 전기용접, 콘크리트, 포장, 거푸집, 건축목공, 비계, 철근, 시추, 굴착

※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 (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) 하는 사람을 말한다.

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.

### 3. 공제조합

2025.05.13 기준

업종	1좌당	자본금	CC등급 이상	C등급
지반조성 · 포장공사업	950,392원	1.5억원	43좌 (40,866,856 원)	53좌 (50,370,776 원)
※개인사업자, 법인사업자 동일				

### 4. 시설 · 장비

#### 사무실

사무실은 「건축법」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,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시 · 도 안에 있어야 한다.

※ 단독주택, 공동주택 등 주거용건물 등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등록 불가

#### 신규등록 소요기간

평균 30~45일 이내 소요